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6월 5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폐지 결정으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93'을 '1,492'로 개정(감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1,457'을 '1,456'로 개정(감 1명)

○ 정원의 직급별 정원포 개정(별표 3)

- 총계 '1,493'을 '1,492'로 개정(감 1명)

- 일반직 총계 '1,488'을 '1,487'로 개정(감 1명)

· 일반직 4급 '9'를 '8'로 개정(감 1명)

· 본청 4급 '7'를 '6'으로 개정(감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 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폐지 결정에 따라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의 “1,457명”에서 “1,456명”으로 1명을 감하고,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의 “1,493명”에서 “1,492명”으로 변경함. 이는 본청의 일반직 4급(미래비전추진단장) 정원 1명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안 [별표 3]에서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본청의 일반직 4급 정원 1명을 감하고 이에 따른 ‘일반직 계’ 및 ‘총계’를 각각 1명 감함.
 - 부칙에서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부터”로 명시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미래비전추진단 폐지 결정으로 인한 일반직 4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따라 기준인건비만 산정하여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 금액 범위 안에서 총정원과 기구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미래비전추진단의 폐지 결정으로 인한 2023년도 4급 인건비 잔액은 불용처리 되며, 집행기관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3 호
----------	---------

제출연월일: 2023. 6.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영등포구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폐지 결정으로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개정(안 제2조)

- '1,493'을 '1,492'로 개정(감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1,457'을 '1,456'로 개정(감 1명)

나.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총계 '1,493'을 '1,492'로 개정(감 1명)
- 일반직 총계 '1,488'을 '1,487' 로 개정(감 1명)
 - 일반직 4급 '9'를 '8' 로 개정(감 1명)
 - 본청 4급 '7'를 '6'으로 개정(감 1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2023년도 4급 인건비 등 잔액 불용 조치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의거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93명”을 “1,49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57명”을 “1,456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직급별						
총 계		1,492	1,492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87	1,487			
일반직	3급	1	1	-	-	-
	4급	8	6	1	1	-
	5급	66	33	2	13	18
	6급 이하	1,411	1,411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1,493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57명</u> 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p> <p>----- ----- <u>1,492명</u> -----</p> <p>-.</p> <p>1. ----- <u>1,456명</u> 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 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1,493</u></td> <td colspan="4"><u>1,493</u></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488</u></td> <td colspan="4"><u>1,488</u></td> </tr> <tr>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일반 직</td>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9</td> <td>7</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66</td> <td>33</td> <td>2</td> <td>13</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1,411</td> <td colspan="3">1,411</td> </tr> <tr> <td>전문 경력관 소계</td> <td>1</td> <td colspan="3">1</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 소	동	총 계	<u>1,493</u>	<u>1,493</u>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1,488</u>	<u>1,488</u>				일반 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소계	1,411	1,411			전문 경력관 소계	1	1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p>[별표 3]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청</th> <th>구의회 사무국</th> <th>보건 소</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1,492</u></td> <td colspan="4"><u>1,492</u></td> </tr> <tr> <td>정무직</td> <td>1</td> <td colspan="4">1</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1,487</u></td> <td colspan="4"><u>1,487</u></td> </tr> <tr> <td rowspan="5"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일반 직</td>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8</td> <td>6</td> <td>1</td> <td>1</td> </tr> <tr> <td>5급</td> <td>66</td> <td>33</td> <td>2</td> <td>13</td> </tr> <tr> <td>6급 이하 소계</td> <td>1,411</td> <td colspan="3">1,411</td> </tr> <tr> <td>전문 경력관 소계</td> <td>1</td> <td colspan="3">1</td> </tr> <tr> <td>별정직 계</td> <td>4</td> <td colspan="4">4</td> </tr> <tr> <td>6급 상당 이하</td> <td>4</td> <td colspan="4">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 소	동	총 계	<u>1,492</u>	<u>1,492</u>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1,487</u>	<u>1,487</u>				일반 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소계	1,411	1,411			전문 경력관 소계	1	1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 소	동																																																																																																																								
총 계	<u>1,493</u>	<u>1,493</u>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1,488</u>	<u>1,488</u>																																																																																																																											
일반 직	3급	1	1																																																																																																																										
	4급	9	7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소계	1,411	1,411																																																																																																																										
	전문 경력관 소계	1	1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 소	동																																																																																																																								
총 계	<u>1,492</u>	<u>1,492</u>																																																																																																																											
정무직	1	1																																																																																																																											
일반직 계	<u>1,487</u>	<u>1,487</u>																																																																																																																											
일반 직	3급	1	1																																																																																																																										
	4급	8	6	1	1																																																																																																																								
	5급	66	33	2	13																																																																																																																								
	6급 이하 소계	1,411	1,411																																																																																																																										
	전문 경력관 소계	1	1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